

○ 귀국 곤란자에 대한 체류신청 관련

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귀국편을 확보하지 못했거나, 본국 거주지로 귀국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
① 「단기체류」 비자로 체류중인 자

⇒ 「단기체류 (30일)」의 체류기간 변경을 허가한다.

② 「기능실습」 혹은 「특정활동 (외국인건설노동자 및 외국인조선노동자)」 비자로 체류중인 자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기관이나 업무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.

⇒ 「특정활동 (30일·취업가)」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.

③ 그 외 비자로 체류중인 자 (위의 ②의 경우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도 이에 포함)

⇒ 「단기체류 (30일)」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한다.

○ 체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신청 절차

코로나19에 따른 상륙제한조치대상자의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.

① 이미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행한 경우

⇒ 심사를 보류한다.

② 신청중인 안건에 대해 활동개시시기 변경희망을 요청한 경우

⇒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사유서 만을 토대로 심사한다.

③ 재입국출국 중에 체류기간을 경과한 자 등 다시 체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을 행해야 하는 경우

⇒ 신청서 및 소속기관에서 작성한 사유서 만을 토대로 심사한다.